



- 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발신 :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문의 : 경실련 정책실(윤철한 정책실장, 서회원 간사) 02-3673-2141
- 시행 : 2019. 06. 10.(총 14매)

정개특위는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바로잡아야 - 경실련, 20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 의견서

1. 제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이번 달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7월 26일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정개특위는 오랜 공전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이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안)으로 지정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냈다. 하지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진척된 바가 없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시급히 논의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질 것을 촉구한다.
2. 국회의원 특권이란 잘못을 저지른 국회의원을 비호하고, 국회의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말한다. 20대 국회에서는 유독 국회 내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제15대부터 20대 국회까지 국회의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에 대한 특권 실태를 토대로, 20대 국회에 특권 내려놓기 의견을 제시한다.

특권 1.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47건 중 5건(10.6%)만 가결.

사학비리, 채용비리 등 각종 비리 혐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제15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47건인데, 이 중에 가결된 것은 총 5건(10.63%)에 불과했다. 20대 국회의 경우 총 5건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었는데, 홍문종(사학비리 혐의)와 염동열(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고, 나머지 3건이 계류되고 있다.

비리 국회의원에 대해 봐주기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비리 혐의 의원들을 보호하는 방탄국회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국회법 제26조 개정사항). 또, 체포동의안, 석방요구안에 대한 표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기명 표결로 하도록 해야 한다(국회법 제112조 제5항 개정사항).

특권 2. 국회의원 징계안 232건 중 128건(55.2%) 임기만료 폐기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15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 현재까지 제출된 전체 의원 징계안 232건 중 처리를 무기한 연기해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징계안이 총 128건(55.17%)에 이른다. 제20대 국회의 경우 현재까지 윤리특위에 상정된 징계안은 43건이고, 철회 3건, 심사대상 제외 2건을 제외한 징계안 38건이 아직도 계류 중이다. 징계안 43건 중 막말이 22건, 괴담과 선동이 8건, 국회의원 내부 정부 이용 재산증식과 직권남용이 5건으로 많았다.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 외부 인사만으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과 행동을 조사토록 하고, 징계안을 의결,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조사위가 권고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 또, 의원 징계에 대한 회의를 원칙적 공개로 개정해야 한다(국회법 제158조).

특권 3. 국회의원 셀프 '세비' 결정. 2년 연속 인상

셋째, 국회의장이 국회 내부 규정인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고치는 방법으로 수당을 인상해오고 있다. 2018년 국회의원 세비가 1억 4994만 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2019년에도 1억 5176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 2019년 기준 국회의원 보수는 월 735만 9000원에 해당하는 수당, 월 136만 8000원에 해당하는 상여금, 월 392만 원에 해당하는 활동비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비과세되어 편법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국회의원 세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기구(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결정하고, 이 권고안을 국회가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의 보수를 법률로 정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과 같이 국회의원 세비의 항목을 모두 법률로 정해야 한다. 또, 입법활동비에 관해 규정한 제6조와 특별활동비에 관해 규정한 제7조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함으로써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

4.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제20대 국회 초반인 2016년에 논의된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다. 당

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2016년 7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최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사무총장이 국회 개혁 방안으로 정보공개 확대, 국외 출장 심사 강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정치개혁을 논의해야 할 정개특위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5. 현재 국민 사이에서 팽배해진 정치 불신은 사실상 국회 내 특권적 관행과 이를 오남용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없이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이루어 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국회 내 특권적 관행은 사회적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 국회 관행이 바뀌지 않고, 선거제도만 바뀐다고 해서 정치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 선거제도가 바뀌서 새로운 정당이나 인물이 국회에 들어간다 해도, 잘못된 제도와 관행이 그대로 라면 새로운 변화가 아닌 기득권이 될 뿐이다. 똑똑하고 유능한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가고 나면, 기성 정치인이 된다는 것을 국민은 안다. 20대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과 더불어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힘써줄 것을 기대한다. “끝.”

제20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 요구안

1. 취지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회의원들에게 과도하게 많은 특권이 주어져 있음. 이는 잘못을 저지른 국회의원을 비호하는 관행, 그리고 국회의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 때문임. 바로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국회의원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그들의 특권 챙기기에만 안주하게 됨. 국민들 사이에 팽배한 국회 불신도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적 관행에서 비롯되는 것임.
- 국회 내 특권적 관행은 정치 발전 속에서도 여전히 존속해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지배하고 있음. 제20대 국회도 이전 국회와 다를 바 없이 방탄 국회, 동물 국회 모습이 나타났음. 지난해인 2018년 4월, 김기식 전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외유성 해외 출장을 떠났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적 행태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졌음. 또, 같은 해 5월, 사학비리 혐의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를 가진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방탄국회’ 논란이 있었음. 지난해인 2018년 12월에 국회는 민생과 직결된 예산안 처리는 미루면서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인상해 공분을 사기도 했음. 최근에는 정치권의 막말 정치에 당 지도부와 국회윤리특위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아 ‘동물국회’가 재연되고 있음.
- 따라서 제20대 국회는 2016년 초반에 논의되었지만 중단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재논의하고, 국회의원의 행태를 지배하는 특권적 관행을 철폐하는 데에 앞장서야 함. 특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는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반드시 국회 개혁도 논의해야 할 것임. 선거제도 개혁으로 새로운 인물이 국회에 들어간다 해도, 국회의 특권적 관행이 해소되지 않고는 새로운 국회를 기대할 수 없음.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뿌리깊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 내 특권적 관행 없애기에 앞장서야 할 것임.

2. 세부 요구안

1) 비리 국회의원 봐주기 근절 (불체포 특권 오남용 금지)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헌법은 현행 범인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헌법 제44조, 국회법 제26조).
-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

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한다.

- 국회법 제26조 (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 하지만 현재 불체포특권은 비리 혐의 국회의원의 보호막 역할로 전락했음. 왜냐하면 현재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회기 중에 의원들을 체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1년의 2/3 이상 회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줄 수 있음.

○ 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면서 비리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음.(현행 국회법 제112조 제5항)

- 국회법 제112조 (표결방법) ⑤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 사직과 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47건임. 체포동의안 47건 가운데 가결은 총 5건(10.63%)이고, 부결은 총 13건(27.65%), 임기만료폐기가 12건(25.53%), 폐기가 10건(21.27%), 철회가 4건((8.51%)임.

〈표〉 체포동의안 처리 현황

	가결	부결	철회	임기만료폐기	폐기	심사중
15대 국회		1		9	2	
16대 국회		7	2		6	
17대 국회		1				
18대 국회	1				2	
19대 국회	4	2	2	3		
20대 국회		2				3
	5	13	4	12	10	3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총 5건임. 이 중 지난해 2018년 5월 21일,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사학비리 혐의)와 염동열 의원(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음.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275표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를 얻었고,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275표 중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받았음. 이로 인해 지난해 방탄국회 논란이 크게 일어났음.

(2) 개정 의견

- 헌법상 불체포특권은 행정부가 자신에 대한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자 국회의원의 활동을 억압하는 것을 방어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임. 하지만 국회의원이 개인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거나 회기를 열지 않는 방식으로 동료 의원을 보호하는 식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따라서 헌법상 주어진 불체포특권은 인정하되, 그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불체포특권이 비리 의원에 대한 봐주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비리 혐의 의원들을 보호하는 방탄국회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함(국회법 제26조 개정사항).
- 체포동의안, 석방요구안에 대한 표결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기명 표결로 하도록 해야 함(국회법 제112조 제5항 개정사항)

2) 비윤리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강화 (면책특권 오남용 금지/징계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면책 특권을 보장하고 있으며(헌법 제45조), 이는 헌법상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업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국회 내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헌법 제45조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다만,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국회법 제46조; 국회법 제46조의 2)
 - 국회법 제46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 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 2에 다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국회법 제46조의 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 또,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음(국회법 제155조; 국회법 제158조).
 - 국회법 제155조 (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국회법 제158조 (징계의 의사)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하지만 의원이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경우 면책 특권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며, 국회 내부에서도 징계 의결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회 내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구성되어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윤리특위가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동료 감싸기’로 일관해왔기 때문임. 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를 두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음. 통상적으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징계안은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겨져 심사를 거치게 되나 자문위의 징계 의견을 따라야 하는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임. 또, 실제 윤리특위에 국회의원 징계안을 올리더라도 언제까지 징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회기 종료 시 자동으로 징계안이 폐기되는 문제가 있음. 게다가 제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상설위원회였던 윤리특위를 비상설기구로 격하시키면서 징계심사 처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지난 15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제출된 전체 의원 징계안 232건 중 처리를 무기한 연기해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징계안은 총 128건임. 심사조차 하지 않고 폐기되는 비율이 전체의 약 55.17%에 달함.

〈표〉 국회 회기별 징계안 처리 결과

	가결	임기만료폐기	폐기	철회	회부	전체
15대 국회		31	12	1		44
16대 국회		10	3			13
17대 국회		24	7	5		36
18대 국회	1	30	7	19		57
19대 국회		33		6		39
20대 국회				5 *심사대상 제외2명 포함	38	43
	1	128	29	36	38	232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0대 국회 국회의 경우 윤리특위에 지금까지 43건의 징계안이 상정되었으며, 3건이 철회되었고,

조원진 김도읍 의원의 징계안 등 2건이 심사 대상 제외로 처리되었음. 징계 사유는 막말(22건), 직무수행 방해(2건), 정파적 의사진행(1건), 성추행 등 품위유지 위반(3건), 괴담과 선동(8건), 국가기밀 누설(2건), 이해충돌 및 직권남용(5건) 등이었음.

〈20대 국회에서 회부된 징계안 현황〉

징계 사유	건수	비고
막말(간첩 망언,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5.18망언, 동료의원에 대한 막말, 다른 정당 폄훼, 좌파독재 막말)	22건	김동철, 이장우, 김진태, 박지원, 한선교, 김민기, 김도읍, 조원진, 곽상도, 유의동, 김석기,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이수혁, 윤영석, 이학재, 홍익표, 나경원, 이해찬, 박광운, 나경원
점거(직무수행 방해, 의사발언 방해)	2건	한선교, 홍영표
정파적 의사진행	1건	정세균
품위유지 위반(작품 전시, 스트립바 출입, 성추행)	3건	표창원, 최교일, 김정우
괴담과 선동(집회)	8건	김한정, 김현권, 박주민, 소병훈, 손혜원, 이재정, 표창원, 조원진
국가기밀 누설	2건	심재철, 강효상
이해충돌(내부 정부 이용 재산 증식)과 직권남용	5건	손혜원, 서영교, 송언석, 이장우, 장제원

(2) 개정 의견

- 불체포 특권과 마찬가지로 면책 특권의 경우 삼권 분립에 의거하여 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필요한 권한으로 보아야 함. 다만, 국회의원의 적절하지 않은 발언과 행동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강화하여 확실히 처벌하거나 제재하도록 해야 함.
- 국회의원 윤리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 윤리특위에 외부 인사(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로부터 추천)만으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조사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조사에 착수해 징계안(징계 수준과 내용)을 의결,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 윤리특위가 처리를 미루지 못하도록 조사위가 권고안을 특위에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도록 해야 함. 만약 윤리특위가 처리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해당 권고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함.
- 그리고 국회법 제158조가 의원 징계에 대한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원칙적 공개로 바뀌야 함.

3)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시 활동비 지급 금지 (국회의원의 겸직 관련 개선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 헌법 제43조에서는 국회의원이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 국회의원의 겸직을 규정한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더불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 따라 의원의 겸직이 허용된 직, 정당의 당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 헌법 제43조 :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국회법 제29조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 정부별 현직 국회의원 장관 비율을 보면, 김대중 정부는 19.8%, 노무현 정부는 13.2%, 이명박 정부는 22.4%, 박근혜 정부는 23.3%를 차지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33.3%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24명 중 8명의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음.
- 국무위원 겸직 국회의원들은 겸직 기간 동안 사실상 국회 회의 출석이나 법안 발의 등 의정활동은 전혀 하지 않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 성실 수행 의무에도 어긋난 것임.
- 권력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직할 경우, 여당 의원의 행정부 견제 역할에 문제가 발생하고 대통령의 영향력을 받을 우려가 있음,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누리는 혜택을 세비를 제외하고 중복하여 받는 문제가 있음.

(2) 개선 방안

-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시 국회의원으로서 받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중복하여 받지 못하도록 함.
- 나아가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은 삼권 분립에 위배되며 국회의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국무위원 겸직 금지도 고려해야 함.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더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하는 것으로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함(국회법 제29조).

4) 국회의원들의 셀프 '세비' 결정 금지(국회의원 수당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국회의원 세비의 법률 근거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함. 1984년에 국회의원 수당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규칙으로도 수당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이 도입되었음. 그리고 1987년에 국회의원 수당 규칙이 제정되면서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수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위임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국회는 이 재위임 규정을 악용하여 1988년 12월 이후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수당을 정하기 시작하였음. 국회의장이 국회 내부 규정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고치는 방법으로 수당을 올려왔음.
- 우리나라는 국회가 독자적으로 급여액이나 상승률을 정하는 국회 단독 결정방식을 택하고 있음. 의원들의 자율 규제 및 자기 통제를 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틈새를 이용하여 지난 18대 국회, 제19대 국회, 제20대 국회에서도 제반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보다는 세비 인상을 선택함. 하지만 국민들은 의원 세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며, 언론들도 국회사무처에서 일일이 알아 봐야 비로소 의원 세비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음.
- 국회의원 보수 가운데 일반수당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지만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비과세함. 그 이유는 정기적인 급여가 아니라 입법활동 지원 경비로 보기 때문임. 국회의원들은 과세 부분 대신 비과세 영역인 두 항목의 수당을 인상하는 형식으로 편법적 혜택을 누리고 있음. 이 때문에 과세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국민 건강보험료도 비슷한 소득의 직장인보다 적게 납부함.

〈표〉 국회의원 세비

연도	국회의원 세비
2010	1억 1843만
2011	1억 2692만
2012~2017	1억 4737만
2018	1억 4994만
2019	1억 5176만

※자료 : 국회사무처, 단위 : 원

〈표〉 국회의원 연봉의 구성

구분		2018년	2019년
수당	일반수당	663만 2000원	675만 1000원
	관리업무수당	59만 7000원	60만 8000원
	정근수당	55만 3000원	56만 3000원
	명절휴가비	66만 3000원	67만 500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13만원
활동비	입법활동비	313만 6000원	313만 6000원
	특별활동비	78만 3000원	78만 4000원
월급합계		1249만 5000원	1264만 7000원
연봉 총액		1억 4994만원	1억 5176만 4000원

※ 출처 : 국회사무처, 단위 : 원, 월(연봉 총액은 원, 연)

- 이러한 세비와 별도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국회 운영 지원 등의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도 주어졌음.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 수집 활동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그 사용처와 지출 금액 자체가 불투명한 돈임. 한마디로 특수활동비는 지출에 대한 제약 없이 사적 용도로 유용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쌈짓돈’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 정작 세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이러한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어떤 공적 업무로 사용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음.
- 2018년 7월에 처음으로 공개된 2011년~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내역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가 월 3,4천만원씩을 받고, 상임위원장·특위위원에게 매월 600만원이 지급되어 왔음. 논란이 붙어지자, 2018년 8월 16일, 국회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안을 발표해 교섭단체 대표 및 상임위원장단 몫의 연간 60억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했지만 의장단 몫의 특활비는 그대로 남겨놓았음.

(2) 개정 의견

- 국회의원 세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 또한 개선해야 함. 국회의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기구(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결정하고, 이 권고안을 국회가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국회의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로 학계·언론계·법조계·종교계·시민단체 등이 추천을 받아 구성함.
- 공무원의 보수를 법률로 정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과 같이 국회의원 세비의 항목을 모두 법률로 정해야 함. 의원에게 지원되는 각종 수당이나 정책개발비 등 복잡하고 혼재되어있는 명칭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입법활동과 회의참석은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이므로 별도의 ‘활동비’ 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따라서 입법활동비에 관해 규정한 제6조와 특별활동비에 관해 규정한 제7조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함으로써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을 삭제해야 함.

- 국회의원들은 활동 범위가 공개된 직무임, 의정활동 외에 특수한 비밀 목적의 활동으로 활동비를 사용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장을 포함해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해야 함.

5) 보좌진 친인척 채용 문제 해결

(1) 현황 및 문제점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별표4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의원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8·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8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 인턴은 1년에 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음. 이들 보좌진의 한 해 보수는 △4급 7,750만 9,960원, △5급 6,805만 5,840원, △6급 4,721만 7,440원 △7급 4,075만 9,960원, △9급 3,140만 5,800원, △인턴 1,761만 7,000원 등임.
- 그런데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혈세 낭비에 대한 비판이 야기됨. 현재 친인척 관련 보좌직원 채용 제한 규정은 없음. 본인이 직접 고용하거나 다른 의원의 보좌진으로 서로 교차 임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 최근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딸, 동생, 오빠를 보좌진에 임명하고, 딸이 모 대학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의원실 인턴경력을 활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음. 특히 2013년 10월 딸을 본인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하며 국가로부터 받은 월급 전액을 자신의 후원금으로 기부함. 박인숙 의원도 자신의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자신의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회계를 맡던 동서를 국회의원실 인턴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짐.

(2) 개정 의견

- 정세균 당시 의장은 2016년 7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으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 또, 국회의원 친족(5촌~8촌까지의 혈족) 등 보좌직원 채용사실을 신고토록 하고, 이를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함.
- 하지만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말고도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휩싸일 수 있으므로,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고, 이 속에 친인척 채용 금지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이미 정부와 국회 등 공적 기관에 가족이 채용 및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한다면 이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음.

6) 국회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근절

(1)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13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계수조정소위 위원 9명(새누리당 장윤석·김학용·김재경·권성동·김성태 의원과 민주통합당 최재성·홍영표·안규백·민홍철 의원 등)이 예산심사시스템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의 혈세를 들어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출국해 논란이 있었음.
- 또, 지난 2018년에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통해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져 국회의원 해외 출장 문제가 다시 문제로 제기된 바 있음.
- 경실련이 지난 2018년 4월 17일, 국정감사 대상 기관 중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43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5월 30일부터 2018년 4월 17일까지 피감기관의 국회의원 해외 출장 지원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431개 기관 중 총 46개 기관이 해외 출장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총 227회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음.
- 최다 지원 상위 국회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17회),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9회),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9회),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8회),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8회)로 나타났음.

〈표〉 피감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지원받은 상위 국회의원

국회의원	횟수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17회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9회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9회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8회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8회

※ 자료 : 경실련 정보공개청구 자료(2012년 5월 30일부터 2018년 4월 17일까지)

-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결과 알아낸 주요 특이사항은 일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국회 임기 마지막 출장으로 인해 외유성 출장이 의심된다는 점임. 또, 주말(토, 일)을 추가로 머무르는 등 관광 등 외유의 가능성도 있었음. 또, 짧은 회의로 인해 일정에도 의무가 있으며, 일정 전반에 특색이 없고, 지역과 내용이 중복된다는 점도 확인됐음. 한편, 업무추진비가 중복으로 지원된 경우도 발견되었으며, 이에 비해 보고서에서 의원들의 시찰 소감이 너무 빈약했음.

(2) 개정 의견

- 김기식 전 국회의원의 논란 이후 국회는 2018년 8월,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및 산하기관 예산

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국외활동 심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어떤 경우에 (피감기관·산하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허용 가능한지 심사하도록 해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외교 활동과 관련한 내용들이 정보 공개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비공개라는 점에서 기인함.
- 따라서 국회의원의 '의원 외교 활동'에 대한 사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언제든지 공개 열람토록 하여, 해당 국회의원들의 해외 방문이 공무에 적합한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외유성은 아닌지를 따져보도록 해야 함.